



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	보도자료	http://www.kcc.go.kr http://www.msip.go.kr
2015. 3. 30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문의 : 방통위 창조기획담당관 김정렬(02-2110-1320), 정우섭사무관(02-2110-1379) 미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진수(02-2110-2250), 양진용사무관(02-2110-6561)		

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 주의 촉구

□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와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는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 (이하, 페이백)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'조기경보'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.

※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하여 발생규모, 지속성,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

-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(3.16~3.22)에만 특정 유통업체(다 *텔레콤, T*통신)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.

<민원확산 조기경보 내용>

단계 (발령일)	민원 제목	주 평균 (3월 3주)	추세	유형	소관기관
관심 ('15.3.25.)	휴대폰 '페이백' 민원	38건 (75건)		피해	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
<페이백 관련 민원 접수현황>

구 분	2015.1	2015.2	2015.3	월평균
합 계	113건	96건	201건	137건

- 방통위는 2015.3.26.(목)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.
-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.
 - 또한,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(전화 : 080-2040-119)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.